

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6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06. 14.

발 의 자 : 정문섭 의원 외 2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11.10.15. 시행)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함. 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(안 제2조제3항 등)
- 나.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(이하“조례 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”를 “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(이하“조례 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접수일로부터”를 “접수한 날부터”로, “제32조의2의 규정에의한보상금”을 “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5조의2”를 “제35조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영 제15조의2”를 “영 제35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영 제15조의2”를 “영 제35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영 제15조의2”를 “영 제35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영 제15조의2”를 “영 제35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위원에대하여”를 “위원에게”로, “상당”을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본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보상금의 청구)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<u>의한</u>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의 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군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<u>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의한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군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.</u></p> <p>제4조(보상심의회회의 위원) ①지방자치법시행령(이하 영이라 한다) <u>제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</u> 보상심의회회의 위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제2조(보상금의 청구) ①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<u>접수한 날부</u> <u>터</u> ----- <u>제34</u> <u>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보상심의회회의 위원) ①--- ----- ----- <u>제35조</u> ----- <u>따</u> <u>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

1. 영 제15조의2 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자로 한다.

2. 영 제15조의2 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군의 기획감사 실장으로 한다.

3. 영 제15조의2 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군의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.

4. 영 제15조의2 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있는 자는 도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등 전문가로 위촉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간사)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간사는 기획감사실정책기획담당주사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여비의 지급기준)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평창군지

1. 영 제35조 -----

-----.

2. 영 제35조 -----

-----.

3. 영 제35조 -----

-----.

4. 영 제35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간사) ①-----
----- 따른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여비의 지급기준) -----

-----.

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.

----- 위원에게-----
----- 해당-----
-----.